신청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프랑스의 제품안전 관련 법제 주요 내용

이유현 | 한남대학교 법정대학 행정경찰학부 조교수

## |. 서론

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는 정보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소비자들은 생산자에 비해 올바른 정보를 획득하거나 다량의 정보를 획득하기가 매우 어렵고 불리한 상황에 있다. 독점적이거나 과점적인 지위의 생산자들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반하는 가격을 제시하는 문제점은 시장경제에서 흔히 당면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정보가 왜곡된 경우이다. 국내 특정 사례들을 보아도 생산자가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소비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을 생산 및 유통하는 경우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다. 따라서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 제품안전과 이에 대한 정확한 제품 정보의 공유가 중요한 시점이다.

한국법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호 목적에서의 접근과 산업 및 공중보건 측면에서의 소비자 보호가 분절적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법전화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포괄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의 제품안전과 관련한 기본적인 법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소비법전(Code de consommation)」이다. 소비법전은 프랑스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두 번째는 프랑스 「민법전(Code de civil)」 제1245조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유럽연합(EU) 지침에 해당하는 「Directive 85/374/EEC on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의 내용이다. 이 규정의 경우 생산자, 유통업자, 판매자들에게 제품의 결함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 외 세 번째로 공중보건법상의 규정에는 특정한 제품에 관한 안전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정한 제품군에는 의료용 제품이나 건강 관련 제품들이 포함된다. 이 글에서는 소비법전의 내용 중 국내 「제품안전법」과 「제조물책임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선별하고,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Ⅱ. 최근 제품안전 규제 동향

프랑스의 최근 제품안전법제는 유럽연합의 지침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1〉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169조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건강 보호에 기여하며, 소비자의 안전 및 경제적 이익, 정보공개권의 증진, 교육 및 이익 보호를 위한 조직구성에 이바지한다.

2013년 유럽집행위원회는 특히 사업자에 대한 의무 강화 및 환경과 같은, 다른 공공 이익에 관련된 제품 위험의 확대를 확인하는 2개의 명령안과 다년간의 행동 계획을 포함하는 안전 및 감시 입법 패키지를 제안하였다 (Ordonnance du 22 août 2008 n° 2008-810). 이 "안전명령안"은 제조업체의 의무 및 수입자의 통제 의무로 위험 분석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예컨대 시장에 출시된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브랜드와 수입 업체는 초기 전문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 기술의 위험 분석을 검증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감독 당국에 제공된 위험분석 방법론(2010/15 결정)도 제시가 되었다. 위험분석 방법론은 기능 분석의 통합을 위해 방법론적이고, 지식과 기술 상태의 인과관계 고려를 위해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 운영자의 고유한 광범위한 자체 점검 시스템에 통합되어야 한다.

2014년에는 「아몽(Hamon)법」으로 알려진 소비자 법률<sup>1)</sup>이 채택되었다. 「아몽(Hamon)법」은 건강 및 환경 문제까지 적용할 수 있는 법률안이었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을도 새롭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몽(Hamon)법」은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을 적용하여 제품생산 뿐만 아니라 '소비 후'까지 내다본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소비법전」 제L212-1조에서는, 제품을 '시장에 처음으로 출시한' 책임자는 제품이 시행 중 인 규정, 특히 사람의 건강과 안전과 소비자의 보호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 법원은 감독의 주의의무의 소홀 또는 결여에 대해 제재하고, 사기죄를 구성하는 나쁜 행위로 간주하여 특히 고용자격, 제품 사용에 내재된 위험, 수행된 점검, 사용법 또는 주의에 대한 사기 또는 사기 미수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sup>1 2014</sup>년 3월 17일의 법률 제2014-344호 (La loi n 2014-344 du 17 mars 2014 relative à la consommation).

기본법에 관해서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지만, 의약품과 화학제품들에 관해서 프랑스 법원은 제조물 책임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정의를 내놓았다. 프랑스 대법원(Cour de Cassation)의 2017년 7월 7일의 결정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법적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제기된 주장이 유럽연합(EU) 공공정책에서 파생된 제조물 책임법률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증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프랑스 법원은 백신이 심각한 질병을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의약품의 경우 제품의 결함 및 제품결함 과 손상 사이에 인과적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한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의 결정(Case C-621/15)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추정이 심각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제품상의 결함과 인과관계에 대한 추정증거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 경우 제품결함과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Decisions 14–18.118 and 15–20.791, October 18 2017)고 보았다. <sup>2)</sup>

# III. 「소비법전 (Code de consommation)」 상 제품안전에 관한 주요 내용

# 1. 일반 규정과 정의

제품 안전과 관련하여서는 「소비법전(Code de consommmation)」상 안전에 관한 일반의무 규정이 기본이 된다. 안전에 관한 일반적 의무규정은 「소비법전」 제L.421-1조부터 제L.421-7조³에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프랑스 「소비법전」 제L421-1조는 "모든 상품 판매 직업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상품의 핵심적인 성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품과 서비스는 정상적인 사용 조건 또는 전문가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다른 조건에서 합법적으로 기대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안전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소비법전」 제L421-3조).

<sup>2</sup> Lexology, Product liability in France.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6ef46767-1ce2-4625-9bf1-1f3899c2fb05 (검색일: 2020년 4월 15일).

<sup>3 2016</sup>년 3월 14일 법률명령 제 2016-301호에 의하여 제정됨.

또한 「소비법전」 제L421-4조에서는 생산자 및 유통업자는 이 장에서 정해진 모든 안전의무를 준수하는 데도움이 되는 모든 유용한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조에서 말하는 생산자는 ① 유럽연합에 설립된 제품 제조업체 및 제품에 자신의 이름이나 브랜드 또는 기타 고유한 표시 또는 제품 복원을 수행하는 표식을 붙여 제조업체로 자신을 제시하는 사람 혹은 ② 제조사가 유럽 연합에 설립되지 않았거나 설립된 대표자가 유럽연합에 없는 경우의 제품 수입업자 혹은 ③ 활동이 제품의 안전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케팅 체인의 다른 사업자(「소비법전」 제L421-4조)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 조에서 말하는 유통업자란 제품의 안전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활동을 하는 마케팅 체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 2. 제품상 결함

제품상 결함에 대해서는 「민법전」 제1245-3조에 의해 개인이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제공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다고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개인이 기대할 수 있는 안전을 결정하기 위해 법원은 제품의 형태, 제품의 합리적인 사용, 제품의 유통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유통 후에 더 나은 제품이 나오는 것은 제품결함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생산자는 청구자에게 계약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의 제조물 책임이 적용된다. 제조물책임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제품 결함이 있는 경우이다.

〈표-2〉 제조물책임의 적용 범위

- 결함 있는 제품에 대한 제조물 책임 (「민법전」 제1245조)
- 계약 혹은 추가 계약에 대한 책임(「민법전」제1103조와 제1240조)
- 잠재적 결함에 대한 보증(「민법전」제1641조)

### 3. 제품 모니터링

「소비법전」제L423-4조에 의해 유통업자는 안전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유통업자는 해당 제품과 관련된 위험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생산자와 관할 행정청이 취한 조치에 대한 협력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과정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유지하고 제공함으로써 시장에 출시된 제품의 안전을 모니터링 에도 참여할 의무가 있다.

### 4.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의무: 고지와 리콜

「소비법전」제3장은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다. 「소비법전」제L423-1조에서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용 기간 또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 기간 동안 제품에 내재된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생산자는 제L423-2조에 따라 제품 특성에 따른 아래의 조치들을 취할 의무가 있다.

#### 〈표-3〉 생산자의 의무

- 시판되는 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 유지
- 시장 철수, 소비자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경고, 시장에 출시된 제품 소비자에 대한 리콜 등의 위험을 통제

이러한 조치는 샘플 테스트를 수행하거나 제품 또는 포장상의 사용자 설명서, 생산자의 신원 및 주소, 제품 참조 또는 제품이 속한 제품의 장소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관한 표시는 소비 담당장관과 관련 장 관의 명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생산자 또는 유통 업자는 시장에 출시된 소비자용 제품이 「소비법전」 제L421-3 조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소비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할 행정 당

국에 즉시 알릴 의무가 있다.<sup>4)</sup> 이에 대한 형식은 소비 담당장관과 관련 장관의 명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이 경우 생산자나 유통업자는 자신이 위험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 또한 이 때의 위험은 합리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요한다.

위험이 고지된 제품에 대한 철수 또는 회수 조치(리콜)가 시행될 때 전문가는 철회 또는 회수된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된 진술서를 작성하고 유지하며, 이는 승인된 대리인이 이용할 수 있다. 시행중인 규정에서 정한 소비자 및 담당 행정 당국의 정보 조치 외에도 제품을 리콜하는 사업자는 전용 웹사이트에서 즉시 이를 신고하고, 신고 내용은 행정청이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법전」 제L223-6조에 의해 생산자에게 벌금을 부과된다.

#### 5. 입증책임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민사법전」 제9조)에게 있으며, 피고가 책임에 대한 제한을 요구할 때 입증책임은 피고에게로 전환된다. 생산자에 대해서 제품상 결함으로 인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자가 실제 제품의 손상 및 제품결함, 결함과 손상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인과관계에 대해 프랑스 판례에서는 '심각하고 정확하고 일치하는' 가정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실제 판례에서는 프랑스 법원은 입증책임을 생산자에게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sup>5)</sup>

<sup>4</sup> 고지 형식은 제품 종류에 따라 식료품 (www.economie.gouv.fr/files/directions\_services/dgccrf/securite/alertes/documents/formulaire\_prof. pdf), 이륜차, (www.legifrance.gouv.fr/eli/arrete/2016/8/17/DEVR1623451A/jo), 자동차 (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 RFTEXT000020581309), 기타 제품 (webgate.ec.europa.eu/gpsd/)으로 상이하다(Chambers & Parterners, Product Liability & Safety, 2019).

<sup>5</sup> Product Liability & Safety 2019, https://practiceguides.chambers.com/practice-guides/product-liability-safety-2019/france (검색일: 2020년 4월 15일).

# 6. 수리 및 교체, 환불

「소비법전」제L217-1조에 따라 제품의 구매자는 제품이 판매계약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제품이 계약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품의 수리 및 교체를 선택할 수 있다. 제품의 수리 혹은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소비자는 제품을 반환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법정 보증의 제한기간은 2년이다.

또한 「민법전」 제1604조에는 적합성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적합성 보증의 제공기간은 5년이다. 또한 「민법전」 제1641조에는 '잠재적 결함'(vices cachés) 에 대한 법정 보증도 존재한다. 제품의 구매자는 제품의 반품과 환불, 제품의 가격 인하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야 결함에 대한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잠재적 결함에 대한 보증은 제한 기간이 2년이다.

### Ⅳ. 결어

프랑스의 제품 안전과 관련된 법제는 「소비법전」에서 많은 부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유럽연합(EU) 지침을 수용한 「민법전」과 공중보건에 관한 법에서도 일부 담당하는 등 여러 법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제품안전 법제는 점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제품 정보의 공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화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규제당국(Direction Générale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et de la Répression des Fraudes, DGCCRF)에서는 Signal Conso(https://signal.conso.gouv.fr/)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 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Signal Conso의 궁극적인 운영목적은 제품 안전을 넘어 소비자에 대한 포괄적인 권익에 대한 보호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함이며, 생산자인 기업에게 그들의 법적인 의무를 알려주고 잘 인식하도록 하는 것에 그 존재의의가 있다.

투명한 제품정보의 생성과 전달은 제품안전과 직결된다. 데이터가 자산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제품 정보를 습득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과 건강을 지켜내는 기초적 수단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책임은 원천적으로 생산자인 기업에 있지만, 소비자 역시 이를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안전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 참고문헌

- Chambers & Parterners, Product Liability & Safety, 2019, https://practiceguides.chambers.com/practice-guides/product-liability-safety-2019/france (검색일: 2020년 4월 15일).
- Lexology, Product liability in France,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6ef46767-1ce2-4625-9bf1-1f3899c2fb05 (검색일: 2020년 4월 15일).
- Signal Conso, https://signalconso.beta.gouv.fr/ (검색일: 2020년 4월 14일).